	학교법인 의담학회 정관	문서번호	1-0-1		
		제정일	1977. 09. 01.		
		개정일	2021. 4. 27.		
		페이지	1/34	관리 부서	법인 사무국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입각하여 전문적인 간호교육을 실시하여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할 간호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의담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 설치·경영한다.

1. 서울간호전문대학(교명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이라 한다)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3동 287번지의 89호에 둔다.

제5조(정관의 변경) ①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 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②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학교법인 의담학회 정관	문서번호	1-0-1		
		제정일	1977. 09. 01.		
		개정일	2021. 4. 27.		
		페이지	2/34	관리 부서	법인 사무국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총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9조의2(예산·결산의 공개)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결산은 당해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 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2(예·결산보고 및 공시)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관시행 세칙으로 정한다.

제 3 절 삭 제

제13조 삭 제

제14조 삭 제

	학교법인 의담학회 정관	문서번호	1-0-1		
		제정일	1977. 09. 01.		
		개정일	2021. 4. 27.		
		페이지	3/34	관리 부서	법인 사무국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8인(이사장 1인 및 개방이사 2인을 포함한다)
2. 감사 2인(추천 감사 1인을 포함한다)

제18조의2(상근임원) ① 임원 중 상근하는 임원으로 이사장 및 이사 중 1인을 둘 수 있다.

- ② 상근하는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19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개방이사를 포함한다)
2. 감사 2년(추천감사를 포함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 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임기 전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 및 이 정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관할청의 해임 요구가 있을 때
3.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 3에 의한 이 법인의 비공개대상 정보를 공개 했을 때
4. 이 법인의 설립이념 및 교육목적을 변경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등을 지도·선동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
5. 이 법인의 중요 추진 사업을 반대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등을 지도·선동하거나 방조한 때

	학교법인 의담학회 정관	문서번호	1-0-1		
		제정일	1977. 09. 01.		
		개정일	2021. 4. 27.		
		페이지	4/34	관리 부서	법인 사무국

- 6. 총장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방조한 때
- 7. 당해 법인 및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거나 방조한 때
- ③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이 법인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제20조의3(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이사정수의 4분의 1로 한다.

제20조의4(개방이사 등의 추천 및 선임 방법) ① 이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 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전)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대상자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법인으로부터 추천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개방이사 대상인원의 2배수를, 감사는 단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개방이사의 추천이 없을 경우, 이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추천위원회는 개방이사와 감사를 추천하는 경우 이 법인 및 대학교의 건학 이념 구현에 적합한 인사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20조의5(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추천위원회는 서울여자간호대학교 평의위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 2. 대학평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 ③ 제2항 제2호의 추천위원은 대학평의위원회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고 이 법인 및 대학교의 건학이념 구현에 적합한 인사이어야 한다.
- ④ 추천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⑤ 추천위원회의 의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학교법인 의담학회 정관	문서번호	1-0-1		
		제정일	1977. 09. 01.		
		개정일	2021. 4. 27.		
		페이지	5/34	관리 부서	법인 사무국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액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2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 ②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이사 정수의 4분의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이사 정수의 3분의1 이상은 교육에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사를 선임한다.
- ⑥ 제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총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 ⑧ 이 법인의 건학이념 및 교육목표에 동의하지 않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의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이사장 직무 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결위 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학교법인 의담학회 정관	문서번호	1-0-1		
		제정일	1977. 09. 01.		
		개정일	2021. 4. 27.		
		페이지	6/34	관리 부서	법인 사무국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와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 2 절 이 사 회

제27조(이사회와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총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와 개최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와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학교법인 의담학회 정관	문서번호	1-0-1		
		제정일	1977. 09. 01.		
		개정일	2021. 4. 27.		
		페이지	7/34	관리 부서	법인 사무국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이사회 의결제적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총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이사회 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 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 및 대학 홈페이지에 사전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에 1년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이사회 소집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의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 절 대 학 평 의 원 회

제32조(대학평의위원회의 설치) 대학교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교에 대학평의위원회(이하 평의회라 한다)를 둔다.

	학교법인 의담학회 정관	문서번호	1-0-1		
		제정일	1977. 09. 01.		
		개정일	2021. 4. 27.		
		페이지	8/34	관리 부서	법인 사무국

제32조의2(평의원회의 구성 등) ① 평의원회의 의원은 총장이 위촉하며, 의원의 정수는 11인으로 하고 의원의 단위별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 4명
2. 직원 : 1명
3. 조교 : 1명
4. 학생대표 : 2명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동문 등 외부인사 : 3명

②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의원의 수가 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의3(교내 평의원회의 위촉)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은 각 단위의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

제32조의4(평의원회 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32조의5(평의원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대표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②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2조의6(평의원회의 소집) 평의원회는 이사장, 대학교육기관의 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제32조의7(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 의담학회 정관	문서번호	1-0-1		
		제정일	1977. 09. 01.		
		개정일	2021. 4. 27.		
		페이지	9/34	관리 부서	법인 사무국

6.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32조의8(평의원회 개최 및 의결 정족수) ① 평의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으면 개최하지 못한다.

② 평의원회의 의사는 의원 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의9(회의록 및 비밀유지) ① 평의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 공개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는 예외로 한다.

② 평의원회 의원은 직무상 습득한 학교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한 경우 평의원회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2조의10(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4 절 사 학 윤 리 위 원 회

제32조의11(사학윤리강령 준수) ① 이 법인은 법인 및 경영하는 학교 운영에 있어“사학윤리강령”(별표3)을 준수한다.

② 이 법인 및 경영하는 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사학윤리위원회 활동에 협조하고 그 결정사항을 준수한다.

제 5 절 수 익 사 업


제33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학교의 운영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임대사업
2. 제1호와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제34조 삭제

제35조(관리인) ① 제33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학교법인 의담학회 정관	문서번호	1-0-1		
		제정일	1977. 09. 01.		
		개정일	2021. 4. 27.		
		페이지	10/34	관리 부서	법인 사무국

제36조 삭제

제 4 장 해 산

제37조(해산) 이 법인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은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 사업을 경영 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제39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 5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면

제40조(임면)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총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대학교육 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총장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강사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임용하며, 임용·재임용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40조의2(정년보장교원의 심사) ① 인사위원회의 동의에 앞서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정년보장교원임용을 위한 심사 기준 등을 따로 정한다.

③ 심사위원회 규정과 심사기준 및 방법 등은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

	학교법인 의담학회 정관	문서번호	1-0-1		
		제정일	1977. 09. 01.		
		개정일	2021. 4. 27.		
		페이지	11/34	관리 부서	법인 사무국

을 받아 확정한다.

제40조의3(정년보장교원의 정수) 정년까지 임용하는 교원의 정수는 전임교원의 40% 이내로 한다.

제40조의4(임용기간의 계산) 임용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5조의 3을 준용한다.


제40조의5(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 ① 정관 제40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1. 근무기간
 - 가. 교수 : 정관 제49조에 규정하는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나. 부교수 : 정관 제49조에 규정하는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 다.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 라. 강사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보수는 업무의 곤란도, 업적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근무조건은 교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4. 업적 및 성과는 연구실적 및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는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의한다.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40조의6(신규채용 등) ① 교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된 교원이 당해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동 대학에서 채용되어 교육·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를 동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1년을 단위로 적용하되, 연간 모집인원이 3인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모집인원이 3인 이상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③ 전문대학 교원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학교법인 의담학회 정관	문서번호	1-0-1		
		제정일	1977. 09. 01.		
		개정일	2021. 4. 27.		
		페이지	12/34	관리 부서	법인 사무국

1. 전임교원 자격심사는 채용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거 응모자격 여부, 전임교원 자격 여부, 제출구비 서류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전임교원 자격심사 조서를 작성한다.
2. 기초심사는 채용 후보자의 전공과 모집 대상 전공분야의 일치 여부 등으로 심사한다.
3. 전공심사는 채용 후보자의 전공과 모집 대상 전공분야의 일치 여부 등으로 심사한다.
4. 면접심사는 기초 및 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 후보자에 대한 인성 등으로 심사한다.
5. 공개강의 심사는 기초 및 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 후보자에 대한 강의능력으로 심사한다.
- ④ 제3항의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 대학교 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채용 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 중 3분의1이상은 본 법인의 임·직원과 본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 아닌자로 한다.
- ⑤ 이사장은 교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 마감일 1월전까지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 ⑥ 교원의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 채용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의7(중전 규정에 의하여 기간제로 임용되어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의 임용) ①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대학 교원은 근무 기간이 종료되어(중전의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제로 임용된 경우의 임용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정관 제40조의 5의 규정을 적용한다.

1. 교수는 정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2. 부교수는 정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거나 6년으로 한다.
3. 조교수는 7년으로 한다.
- ② 이사장은 근무기간이 종료되는 대학교 교원의 신청에 따라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관한 기준과 세부적인 절차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⑤ 이사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거쳐 근무기간 종료일 2월전까지 해

	학교법인 의담학회 정관	문서번호	1-0-1		
		제정일	1977. 09. 01.		
		개정일	2021. 4. 27.		
		페이지	13/34	관리 부서	법인 사무국

당 대학교 교원에게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총장은 대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 연구 등에 관한 업적을 평가한다.

⑦ 이사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업적평가 결과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총장은 업적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41조(특별채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이사장은 기간을 정하여 특별채용 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임용 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4.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5. 국·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을 본 대학교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채용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다만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제41조의2(기간제 교원)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 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4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을 때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 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
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② 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③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1조의3(전형결과 공개) ①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 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학교법인 의담학회 정관	문서번호	1-0-1		
		제정일	1977. 09. 01.		
		개정일	2021. 4. 27.		
		페이지	14/34	관리 부서	법인 사무국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


제 2 관 신분보장

제42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휴양을 요할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자녀(휴직신청당시 1세 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제43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42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로 한다.
4. 제4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4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2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제42조 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학교법인 의담학회 정관	문서번호	1-0-1		
		제정일	1977. 09. 01.		
		개정일	2021. 4. 27.		
		페이지	15/34	관리 부서	법인 사무국

- 8. 제42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9. 제42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0. 제42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제44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휴직 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제42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5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2조 제1호 및 제5호 중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휴직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하며, 외국에서 1년간 연수하게 된 때에는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 ② 제42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6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임면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학교법인 의담학회 정관	문서번호	1-0-1		
		제정일	1977. 09. 01.		
		개정일	2021. 4. 27.		
		페이지	16/34	관리 부서	법인 사무국

명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 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선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47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며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제49조(정년)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준용한다. 단, 총장은 예외로 한다.

제50조(명예퇴직수당) ①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대상 범위·지급액·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에 의한다.

제51조(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 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학교법인 의담학회 정관	문서번호	1-0-1		
		제정일	1977. 09. 01.		
		개정일	2021. 4. 27.		
		페이지	17/34	관리 부서	법인 사무국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2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총장은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3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제1항의 심의를 함에 있어서 제40조의 5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은 제40조의5 제1항 제4호를, 제40조의7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은 제40조의 7 제6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54조(인사위원회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5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6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7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58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학교법인 의담학회 정관	문서번호	1-0-1		
		제정일	1977. 09. 01.		
		개정일	2021. 4. 27.		
		페이지	18/34	관리 부서	법인 사무국

제59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 원 징 계 위 원 회

제60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61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2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3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 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4조(위인의 기피 등) ① 징계 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 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

	학교법인 의담학회 정관	문서번호	1-0-1		
		제정일	1977. 09. 01.		
		개정일	2021. 4. 27.		
		페이지	19/34	관리 부서	법인 사무국

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5조(징계의결 요구 사유 통지)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6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7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68조(징계 의결시의 정상 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정·징계요구의 내용·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9조(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70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 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71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학교법인 의담학회 정관	문서번호	1-0-1		
		제정일	1977. 09. 01.		
		개정일	2021. 4. 27.		
		페이지	20/34	관리 부서	법인 사무국

제 3 절 삭 제


- 제72조 삭제
- 제73조 삭제
- 제74조 삭제
- 제75조 삭제
- 제76조 삭제
- 제77조 삭제
- 제78조 삭제
- 제79조 삭제
- 제80조 삭제
- 제81조 삭제
- 제82조 삭제
- 제83조 삭제
- 제84조 삭제
- 제85조 삭제

제 4 절 사 무 직 원

제86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술직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 직원”이라 한다)으로 임명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학교법인 의담학회 정관	문서번호	1-0-1		
		제정일	1977. 09. 01.		
		개정일	2021. 4. 27.		
		페이지	21/34	관리 부서	법인 사무국

③ 재직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87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승진·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 해제·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총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88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9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정당하도록 직급 및 근무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90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91조(정년) 일반직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를 준용한다.

다만, 정년이 도래된 직원 중 조직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으며 연봉은 재조정한다.


제92조(징계 및 재심청구) 일반직원의 징계 및 재심청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제 6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93조(법인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참여로 보한다.

② 법인사무국에는 총무팀을 두며 팀의 장은 참사로 보한다.

	학교법인 의담학회 정관	문서번호	1-0-1		
		제정일	1977. 09. 01.		
		개정일	2021. 4. 27.		
		페이지	22/34	관리 부서	법인 사무국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대 학

제94조(총장 등)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제95조(하부조직) ① 대학교 교학처에는 교무팀, 입학관리팀을 두며, 학생처에는 학생팀을 두고, 기획처에는 기획홍보팀을 두며, 산학협력처에는 산학협력팀을 두며, 사무처에는 총무팀, 회계팀, 전산팀을 둔다.

② 교무처장, 학생처장, 산학협력처장, 기획처장 및 각 부서의 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 부참사 이상으로 한다.

③ 사무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 참여로 보하고, 각 팀장은 부참사로 보한다.

④ 제1항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6조(부속시설) ①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② 부속시설의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이상 교원으로 겸보한다.

③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7조(도서관) ① 도서관에 수서과, 열람과를 두며, 관장은 조교수이상 교원으로 겸보하고, 수서관장은 부참사로 보하고 열람과장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절 정 원


제98조(정원) 법인 및 대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학교법인 의담학회 정관	문서번호	1-0-1		
		제정일	1977. 09. 01.		
		개정일	2021. 4. 27.		
		페이지	23/34	관리 부서	법인 사무국

제 7 장 보 칙

제99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 신문에 공고한다.

제100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학교법인 의담학회 정관	문서번호	1-0-1		
		제정일	1977. 09. 01.		
		개정일	2021. 4. 27.		
		페이지	24/34	관리 부서	법인 사무국

제101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 기	주 소
이사장	하 일 우	1931.11.13	4년	서울 은평구 불광동 238-2
이 사	하 두 철	1899. 3.17	"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75
"	김 봉 래	1906. 2. 6	"	서울 은평구 불광동 238-2
"	하 창 우	1935.10.13	"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75
"	엄 기 준	1937. 2.18	"	서울 은평구 갈현동 281-169
"	박 순 섭	1916.11.23	"	충북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115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7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 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학교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 (학교의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하여

	<h2>학교법인 의담학회 정관</h2>	문서번호	1-0-1		
		제정일	1977. 09. 01.		
		개정일	2021. 4. 27.		
		페이지	25/34	관리 부서	법인 사무국

임명된 학교의 부학장 등의 보직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⑤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교의 인사위원회 위원 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⑥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9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h3>학교법인 의담학회 정관</h3>	문서번호	1-0-1		
		제정일	1977. 09. 01.		
		개정일	2021. 4. 27.		
		페이지	26/34	관리 부서	법인 사무국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 ⑤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원징계 재심위원회에 대한 조치) 이 정관 제5장 제3절은 1991.5.31.”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4376호) 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사립학교법의 ”재심위원회“ 관련조문이 삭제되고, 교원의 재심청구업무를 교육부의 ”교원징계 재심위원회“에서 관장하게 되므로 이 정관중 제5장 제3절 관련조문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를 삭제한다. (전행 25422-340, 91.6.19.관련임)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학교법인 의담학회 정관	문서번호	1-0-1		
		제정일	1977. 09. 01.		
		개정일	2021. 4. 27.		
		페이지	27/34	관리 부서	법인 사무국

규정에 의하고 임용 잔여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서울간호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서울여자간호대학”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이 정관 제40조의 7의 규정은 2003년 2월 일부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의 7 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 (채용심사위원회에 관한 적용례)정관 제40조의 6 제4항의 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대학 교원의 채용심사부터 적용한다.
- ③ (채용공고에 관한 적용례)정관 제40조의 6 제5항의 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되는 신규채용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이 정관은 200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이 정관은 200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학교법인 의담학회 정관	문서번호	1-0-1		
		제정일	1977. 09. 01.		
		개정일	2021. 4. 27.		
		페이지	28/34	관리 부서	법인 사무국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1월 21일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 당시 기 선임된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유지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3월 29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1월 9일로부터 시행한다.
- ② (임원 선임기간의 예외)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원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 ③ (학교장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개정 정관 시행 당시 재임중인 학교장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장의 임기 종료일까지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학교법인 의담학회 정관	문서번호	1-0-1		
		제정일	1977. 09. 01.		
		개정일	2021. 4. 27.		
		페이지	29/34	관리 부서	법인 사무국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② (부교수 임용기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제40조의7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부교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③ (조교수 임용기간 변경에 관한 경과 조치) 종전 정관에 의하여 본 대학 최초 임용시부터 조교수로 임용된 교원에 대해서는 종전 정관의 기간에 따른다.
- ④ (전임강사에 대한 경과 조치) 종전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전임강사는 이 개정 정관에 따른 조교수로 보며, 전임강사의 근무경력은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학교법인 의담학회 정관	문서번호	1-0-1		
		제정일	1977. 09. 01.		
		개정일	2021. 4. 27.		
		페이지	30/34	관리 부서	법인 사무국

부 칙

① (시행일) 2012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호 , 제20조의4제3항, 제20조의5 제1항 및 3항, 제40조의6제4항, 제40조의7제2항 및 제5항 내지 제6항, 제41조 제1항제5호, 제94조제1항 내지 제2항, 제95조제1항, 제96조제1항, 제98조의 변경조문은2012년1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 및 제95조는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은 제19조 (임원의 임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학교법인 의담학회 정관	문서번호	1-0-1		
		제정일	1977. 09. 01.		
		개정일	2021. 4. 27.		
		페이지	31/34	관리 부서	법인 사무국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② (평의원 의원의 구성 및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평의원은 제32조의2(평의원회 구성 등) 및 제32조의5(평의원의 임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평의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② (평의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평의원은 제32조의2(평의원회 구성 등)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평의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학교법인 의담학회 정관	문서번호	1-0-1		
		제정일	1977. 09. 01.		
		개정일	2021. 4. 27.		
		페이지	32/34	관리 부서	법인 사무국

[별표 1]

법 인 일 반 직 정 원


일 반 직 계	5명
2 급 (참 여)	1명
3 급 (부참여)	1명
5 급 (부참사)	1명
6 급 (주 사)	1명
8 급 (서 기)	1명
기 능 직 계	1명
6 등급	1명
총 계	6명

	학교법인 의담학회 정관	문서번호	1-0-1		
		제정일	1977. 09. 01.		
		개정일	2021. 4. 27.		
		페이지	33/34	관리 부서	법인 사무국

[별표 2]

학 교 일 반 직 정 원

<p>일 반 직 계 51명</p> <p style="padding-left: 20px;">2 급 (참 여) 1명</p> <p style="padding-left: 20px;">3 급 (부참여) 1명</p> <p style="padding-left: 20px;">4 급 (부참여) 3명</p> <p style="padding-left: 20px;">5 급 (부참사) 3명</p> <p style="padding-left: 20px;">6 급 (부참여) 6명</p> <p style="padding-left: 20px;">7 급 (부참여) 6명</p> <p style="padding-left: 20px;">8 급 (주 사) 15명</p> <p style="padding-left: 20px;">9 급 (서 기) 16명</p>
<p>기 술 직 계 2명</p> <p style="padding-left: 20px;">7 급 (사 서) 1명</p> <p style="padding-left: 20px;">8 급 (사서보) 1명</p>
<p>총 계 53명</p>

	학교법인 의담학회 정관	문서번호	1-0-1		
		제정일	1977. 09. 01.		
		개정일	2021. 4. 27.		
		페이지	34/34	관리 부서	법인 사무국

[별표 3]


私學倫理綱領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 私學은 나라와 겨레의 發展을 선도해 왔다. 이처럼 빛나는 傳統을 이어 받은 우리 私學은 지금, 새 세기의 文明史의 變化에 能動的으로 對應하며, 自由民主主義를 守護하고 知識基盤 社會를 선도할 創造的이고 道德的으로 成熟된 人才를 養成할 歷史的 責務를 附與받고 있다.

이에 우리 私學經營者 일동은 教育立國의 使命感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私學의 公共性과 自律性을 드높이고자, 뜻을 모아 私學倫理綱領을 採擇한다.

우리는 良心과 矜持를 가지고 이 綱領을 遵守하며, 이에 違反되는 경우에는 勤勉과 制裁로 이를 自律的으로 是正해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

- 建學精神 : 우리는 私學의 뿌리가 崇高한 健學精神에 있음을 銘心하며, 오로지 그 높은 뜻을 繼承하고 實現하는 일에 獻身한다.
- 公共性 : 우리는 私學經營에 있어 學園內外的 個人이나 集團의 사사로운 利害關係를 초월하여 公共性的 原則을 尊重함으로써 教育福祉理念을 具現하는데 最善을 다한다.
- 自主性 : 우리는 教育의 自主性과 專門性, 政治的 中立性을 保障한 憲法精神에 立脚하여, 私學의 本質을 侵害하는 어떠한 規制나 干涉도 斷乎하게 排擊하며, 自律的으로 教育方針을 實踐하여 私學의 特殊性을 昂揚한다.
- 經營合理化 : 우리는 私學經營을 合理化 · 效率化하고, 모든 教育資源을 公正하고 透明하게 管理 · 保護함으로써, 教育效果를 極大化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努力을 傾注한다.
- 和合 · 協力 : 우리는 私學 構成員 모두가 自發的으로 參與하고 獻身할 수 있도록 和合 · 協力하는 教育環境을 助成하며, 모든 構成員의 正當한 權益이 尊重되도록 努力한다.

	학교법인 의담학회 정관	문서번호	1-0-1		
		제정일	1977. 09. 01.		
		개정일	2021. 4. 27.		
		페이지	35/34	관리 부서	법인 사무국

2. 학교법인 의담학회 이사회임원 명단

직 위	성 명	비 고
이 사 장	신 준 호	
이 사	김 중 수	교육이사
이 사	윤 승 흥	개방이사
이 사	정 영 희	개방이사
이 사	오 세 영	교육이사
이 사	이 태 영	교육이사
이 사	최 윤 숙	
이 사	조 정 미	교육이사
감 사	고 희 철	추천
감 사	김 우 식	